

완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체납자가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소유권 유지 조건부 약정(walking possession agreement)

집행관과 체납자가 체납세 납부 이행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 행사 잠정 중지(close possession)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 행사를 잠정 중지시키고 납부 불이행시는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③ 재산압류(remove the goods)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한다.

그 외에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파산절차(bankruptcy proceedings)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8. 체납자의 구속

council 정부는 체납자에 대해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도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체납자의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법원은 체납자의 자산조

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체납을 했거나 책임을 물을 만한 태만으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발부된다. 구속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X. 구제제도

1. 이의신청의 대상

납세자는 council 정부의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과세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council 정부가 다른 납세자의 고지서를 송부하여 온 경우

2) 납세자가 자기의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3) 고지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경감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 또는 장애자에 대한 경감율 적용 누락 등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먼저 불복의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council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council 정부는 2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이 결정에 대해